*	•
_	\sim



2015.3.5.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05호 조

기획예산과-2868

문서번호

2015년 예산성과금 운영 계획

2015. 3.



성 동

(기획예산과)

::: 해당사항에 ☑ 표시하시기 비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			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□ 공약(약속)사업 □ 계속사업 ☑ 인센티브/공	공모사업 🗌		
ᄉᄐᄇᅅ	● 구 민: 유☑(무 🗆		
소통분야	● 전 문 가: 유 ☑ (예산성과금심시위원회)	무 🗆		
고 려 사 항	● 이해당사자: 유 □ (무 ☑		
기 타	일 자 리 □ 환경영향 □ 안 전 □ 유지비용 □ 바른	공공언어 ☑		
고 려 사 항	성 인 지 □ 취약계층 □ 장 애 인 □ 디 자 인 □ 갈등날	발생 요인 ☑		
	● 중 앙 부 처 : 유 □ () -	무☑		
타자원 활용	● 서 울 시 : 유□(무☑		
	● 기 업: 유□(무☑		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) -	무☑		
언 론 홍 보	기획보도 □ 보도자료 □ SDTV □ 성동뉴스레터 □ 성동	구소식지 🗆		
계 획	기 고 문 □ 전자행정서비스 □ S N S □ 기타(리플릿 등) □ 없 ·	음 🗹		
◎ 홍 보 제 목 :				
● 중점 홍보사항				
_				
-				
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

2015년 예산성과금 운영 계획

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구 예산의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 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구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Ⅰ 추진근거

- ○「지방재정법」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~ 제54조
- ○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(행정자치부령)
- ○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

Ⅱ 추진방향 및 일정

○ 추진방향

-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및 수입증대 방안 제고
-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사기진작
- 창의와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유도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

○ 추진일정

- ▶ 2015. 3. 10.(화) 성과금 신청
 - (각 부서 → 자체심사위원회)
- ▶ 2015. 3. 31.(금)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과 제출
 - (국 · 기관 → 기획예산과)
- ▶ 2015. 4. 14.(화)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
- ▶ 2015. 4. 17.(금) 예산성과금 지급(예정)

○ 심사대상: 2014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업

- 지출절약: 정원감축,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업무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세출예산을 절약한 경우
- 수입증대: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
- 예산낭비 신고 및 지출절약 ·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

○ 지급대상

-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또는 최소단위 조직
- 성동구 사무를 위임·위탁 받아 수행한 기관의 임·직원
-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

○ 지급기준

가. 지축절약

- 정원감축으로 이한 이건비 절약의 경우: 감축된 이건비의 1년분 이내
- 경상적 경비 절약의 경우: 절약된 경비의 50% 이내
-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: 절약된 경비의 10% 이내

나. 수입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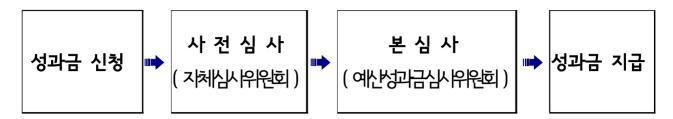
-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: 수입 증대액의 10% 이내
- ※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 절약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 지급 가능

○ 예산액: 20,000천 원

- 개인별 지급 한도(규칙): 10.000천원
-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
-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30% 범위 내 가산지급 가능

Ⅳ 심사절차

○ 심사단계



○ 성과금 신청

- 각 부서별로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자체심사위원회에 제출
- 민간인의 제안으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작성

○ 사전심사(자체심사위원회)

가. 위워회 구성

- 각 국별, 기관별(보건소, 구의회, 공단)로 구성
 - ▶ 감사담당관, 공보담당관 및 동 주민센터는 행정관리국에 포함
- 위원장은 국장(기관장)이 되고, 위원은 소속 과장(급)으로 구성

나. 심사 내용

- 소속 부서(원)에서 신청한 예산성과금에 대한 적정 여부
- 신청한 예산성과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

○ 본심사(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)

가. 위워회 구성

- 위 원 장: 부구청장 부위원장: 기획재정국장
- 내부위원(5명): 행정관리·주민생활·도시관리·안전건설교통국장 및 보건소장
- 외부위원(3명):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(※ 명단 별도 붙임)

나. 심사 내용

- 예산성과금 심사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
- 예산성과금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 및 지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
-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별 지급액의 산정 등

V 행정사항

○ 소요예산: 20,210천 원

- 예산성과금(포상금): 20,000천 원
 - ▶ 기획,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,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, 예산 성과금 운영, 포상금, 포상금(303-01)
- 심사위원회 위촉 위원 수당(사무관리비): 210천 원(70,000원 * 3인)
 - ▶ 기획,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,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, 예산 성과금 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(201-01)

○ 사후조치

-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반영
- 성과금 지급 후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를 각 부서에 전파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
- 붙임 1.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.
 - 2.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1부.
 - 3. 자체심사위원회 의결서 양식 1부.
 - 4. 2009 ~ 2014년 예산성과금 지급 목록(참고용) 1부.
 - 5.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예산 절약 사항(관련법규) 1부. 끝.